

# 定 款

주식회사 더존비즈온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상호) 이 회사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DOUZONE BIZON CO.,LTD. 라 표기한다.

제 2 조 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1)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
- 2)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시스템 유지보수
- 3) 컴퓨터기기 개발 및 유지보수
- 4)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사업
- 5) 에스아이(SI)사업
- 6) 경영컨설팅 사업
- 7) 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
- 8) 에이에스피(ASP-Application Service Provider) 사업 및 웹호스팅(WEB-hosting) 운영
- 9) 인터넷 포탈 사이트 운영
- 10) 인터넷 방송운영
- 11) 이 마켓플레이스(E-Market place) 운영 및 통신판매 사업
- 12) 지식, 인력 개발사업
- 13) 출판, 인쇄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
- 14) 학원운영업
- 15) 별정통신사업
- 16)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
- 17) 광고대행업
- 18) 인터넷 정보제공사업
- 19) 전자상거래
- 20) 전자금융업
- 21)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금융부가통신망 서비스업
- 22) 컴퓨터 및 주변기기, 전산 전자용품 도소매 및 알선
- 23)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지식·인력 개발 및 평생교육사업
  - 가) 회계, 금융, 세무 및 경영관련 지식정보의 제공
  - 나)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
  - 다) 교수,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
  - 라) 교육위탁사업
  - 마)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
  - 바)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
- 24) 교육컨텐츠 개발 및 판매업
- 25) 출판업 및 도서판매업

- 26) 교육업 및 교육프랜차이즈업
- 27)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
- 28)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
- 29) 데이터베이스구축 제공 및 자문업
- 30) 보안솔루션 제공 및 계도활동
- 31) 인터넷정보서비스
- 32) 정보통신공사업
- 33) 도소매 및 무역업
- 34) 소프트웨어(범용성)복제업
- 35) 전자지급결제대행(PG)
- 36) 결제대금예치
- 37) 전자고지결제
- 38) 핀테크 관련 데이터분석, 개발, 판매, 유지보수 및 제공
- 39) 개인과 기업의 정보, 신용, 자본, 금융시장 데이터수집, 분석과 이를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제공
- 40) 대출, 보험대리,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
- 41) 뱅사업
- 42)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
- 43) 정보의 축적·처리·제공 및 교환·인증·전송사업과 멀티미디어서비스 등
- 44) 여론조사 및 리서치업
- 45) 광고매체판매업
- 46) 정부로부터 인가·허가 또는 위임 받았거나 정부에 신고·등록한 사업
- 47)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
- 48) 저작권 중개알선업
- 49) 서비스를 위한 유통 채널 개발 및 확장을 포함하여 서비스 개발, 보수 유지, 지원, 향상 및 촉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 활동
- 50)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중개, 거래 및 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사업
- 51) 상품권의 발행, 관리 및 유통 판매업
- 52) 대출, 보험대리, 채권매입,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
- 53) 창업기획자 활동(창업기업 선발, 보육, 투자 등)
- 54) 직업정보제공사업
- 55) 국내/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
- 56)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

### 제 3 조 (본점 및 지점소재지)

-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강원도 춘천시에 둔다.
-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 및 국외의 지역에 지점, 분공장, 영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 4 조 (공고)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douzone.com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

## 제 2 장 주 식

제 5 조 (발행예정주식수의 총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 주로 한다.

제 6 조 (일주의 금액)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일주의 금액은 오백 원으로 한다.

제 7 조 (주식의 종류)

-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으로 한다.
- ②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, 주식의 양도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우선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.

제 8 조 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및 주권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9 조 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

- ①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, 주식의 양도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우선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.
- ③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%이상 10%이내에서 또는 달리 이사회가 정하는 방식에 의해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.
- ④ 제1항의 우선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,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을 정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의 우선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,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함을 정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의 우선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, 당해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

있는 것으로 한다.

-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- ⑧ 제1항의 우선주식으로서 일정한 시기의 도래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통주식 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의 경우에, 그 시기의 도래까지 소정의 우선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시기를 연장한다.
-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제 9 조의2 (상환우선주)

- ① 회사는 제9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.
-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.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.
  - 1)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
  - 2)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
-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.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다.
-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상환가능이익이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.
- ⑥ 상환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.

#### 제 9 조의3 (전환우선주)

- ① 회사는 제9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. 단,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결의로 인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(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)을 정할 수 있고,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(유상증자, 무상증자,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, 주식배당 등)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- ③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2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④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 단,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전환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.

#### 제 9 조의4 (상환전환우선주)

- ① 회사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9조의3 제2항 내지 5항을 준용한다.

#### 제 10 조 (신주인수권)

-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  - 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
  - 2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3)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4)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
  - 5)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- 6) 국내·외 금융기관, 일반법인 및 개인 등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7)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8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 - 9)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국내외의 외부자문역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416조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10 조의2 (신주의 배당 기산일)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

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# 제 10 조의3 (일반공모절차)

-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제9조 제2항 제5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국내·외 금융기관, 일반법인 및 개인 등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④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.
- ⑤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(DR)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⑥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.
- ⑦ 다만, 이 경우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6조의 8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-18조에 따라, 제3자 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-18조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한다.

#### 제 10 조의4 (주식매수선택권)

- ① 이 회사는 임·직원(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·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 형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, 경영,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·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·직원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 - 1) 최대주주(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.) 및 그 특수관계인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) 다만, 제2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 - 2) 주요주주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음.)와 그 특수관계인, 다만, 제2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 - 3)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.
-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

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, 해당 주주 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에 결의로 정하는 행사 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.

-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1) 회사의 경영 및 기술개발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.
  - 2) 회사의 경영 및 기술개발에 기여할 능력을 지닌 우수 인력
-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1)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·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  - 2)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  - 3)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  - 4)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.
  - 1)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
  - 2)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
  - 3)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
-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의결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의결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1)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    - 가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    - 나) 당해 주식의 권면액
  - 2)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2(신주배당 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제 10 조의5 (주식의 소각)

- ①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.

#### 제 11 조 (전환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에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

- 1)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 - 2)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 - 3)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·외 금융기관, 일반법인 및 개인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 - 4)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 - 5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  -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  -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9조2(신주배당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⑥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가 조정은 할 수 있으며, 그 조정한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## 제 12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, 우선주식, 상환우선주식, 전환우선주식, 상환전환우선주식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며,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상환기일 직전 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등의 관계법규가 행사기간에 특별 한 제한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⑤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신주의 발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⑥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행사가격 조정을 할 수 있으며, 그 조정한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## 제 12 조의2 (교환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12 조의3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.

제 13 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 14 조 (명의개서대리인)

- ① 이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-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.
-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.

제 15 조 (삭제 2019.03.28)

제 16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-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## 제 3 장 주 주 총 회

제 17 조 (소집시기)

-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일 후 3월 이내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18 조 (소집권자)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(사장)이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(사장)이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 19 조 (소집통지 및 공고)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

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-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근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1 조 (의장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 22 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소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.

제 23 조 (주주의 의결권)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제 24 조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 이 회사,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제 25 조 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-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6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
-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7 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

-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

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. 단,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이라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60이상,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또한 동일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적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의해 1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1항의 개정 또는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,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

제 28 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## 제 4 장 이사·이사회·감사

제 29 조 (이사와 감사의 수)

-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-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.
- ③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의해 1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1항의 개정 또는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,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

제 30 조 (이사 및 감사의 선임)

-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
- ④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31 조 (이사 및 감사의 임기)
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-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.

#### 제 32 조 (이사 및 감사의 보선)

-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③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 33 조 (대표이사 등의 선임)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한다.
- ② 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.

#### 제 34 조 (이사의 직무)

-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 34 조의2 (이사의 보고의무)

-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 35 조 (감사의 직무)

-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.
-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⑦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제 35 조의2 (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

-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 (사외이사의 경우는 6배, 감사의 경우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-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6 조 (감사의 감사록)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 37 조 (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
-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38 조 (이사회 의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 의 의장은 제 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.
- ③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39 조 (이사회 의 의사록)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40 조 (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

-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규정에 의한다.

제 41 조 (상담역 및 고문)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## 제 5 장 계 산

제 42 조 (사업연도)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3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.비치)

-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(사장)은 정기주주총회 회일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) 대차대조표
  - 2) 손익계산서
  - 3)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-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(사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대표이사(사장)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부분을 본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④ 대표이사(사장)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인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4 조(이익의 처분)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 잉여금(이월이익잉여금 포함)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① 이익준비금(상법상의 이익준비금)
- ② 기타의 법적 적립금
- ③ 배당금
- ④ 임의적립금
-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
- ⑥ 차기이월이익잉여금

제 45 조(이익배당)

-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6 조 (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
제47조 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(준용규정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.

제 2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1996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9조의 2, 제 15조, 제 27조, 제 30조, 제 31조, 제34조의 2, 제35조, 제 36조, 제39조, 제 45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 11조 1항 3항의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제 9조, 제 9조의3, 제 9조의4, 제 29조, 제 45조의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제 30조의 3의 개정 규정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 3 조(시행일) 제5조, 제9조, 제9조3, 제9조4, 제11조, 제12조, 제29조,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4 조(시행일) 제2조, 제3조,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제 5 조(시행일) 제1조,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9조3, 제9조4, 제9조5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2조2, 제13조, 제19조, 제22조, 제27조, 제29조, 제34조2, 제35조, 제37조, 제45조, 제47조 등의 개정 및 신설 규정은 2006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 6 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07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 7 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08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 8 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0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9 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0 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11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1 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12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0조 제5항, 제35조, 제35조2, 제38조, 제43조 개정내용은 201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2 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1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3 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17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4 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18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15조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12조의 3, 제14조, 제15조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16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17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22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18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23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